##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289

발의연월일: 2022. 9. 7.

발 의 자: 어기구·김정호·김주영

박상혁 • 서삼석 • 송갑석

신정훈 • 위성곤 • 윤재갑

이개호 · 이원택 의원

(11일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협(경제지주)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추후 정부로부터 이자 등 제비용을 보전 받고 있음.

최근 쌀의 공급과잉 및 소비급감에 따라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이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「은행법」 제35조·제35조의2 및 「금융지주회사법」 제45조·제45조의 2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의 추가 차입에 어려움이 있음.

시장격리곡 매입 등과 같이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런하여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 및 효과적인 수급안정대책 시 행 등과 같은 정부 정책사업에 효율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1조의10제6항 및 제161조의11제9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1조의10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농협금융지주회사(「금융지주회사법」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포함한다)가 중앙회(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)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「금융지주회사법」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제161조의11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⑨ 농협은행이 중앙회(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)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신용공여 하는 경우에는 「은행법」제35조 및 제3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1조의10(농협금융지주회사)	제161조의10(농협금융지주회사)
① ~ ⑤ (생 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⑥ 농협금융지주회사(「금융지
	주회사법」 제4조제1항제2호에
	따른 자회사등을 포함한다)가
	중앙회(농협경제지주회사 및
	그 자회사를 포함한다)의 국가
	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신용공
	여하는 경우에는 「금융지주회
	<u>사법」 제45조 및 제45조의2를</u>
	적용하지 아니한다.
제161조의11(농협은행) ① ~ ⑧	제161조의11(농협은행) ① ~ ⑧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⑨ 농협은행이 중앙회(농협경
	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
	함한다)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
	을 위해 신용공여 하는 경우에
	<u>는 「은행법」 제35조 및 제35</u>
	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